

경 북 도 립 대 학 교 학 칙

- [제 정 1997. 3. 1 제 1호]
- [개정 1997. 10. 7 제 32호]
- [개정 1998. 8. 20 제 44호]
- [개정 1999. 1. 15 제 58호]
- [개정 1999. 8. 4 제 86호]
- [개정 1999. 10. 30 제 88호]
- [개정 2000. 8. 18 제105호]
- [개정 2001. 2. 16 제113호]
- [개정 2002. 2. 27 제118호]
- [개정 2002. 5. 16 제130호]
- [개정 2003. 2. 28 제132호]
- [개정 2003. 11. 25 제136호]
- [개정 2004. 2. 5 제140호]
- [개정 2004. 2. 27 제144호]
- [개정 2004. 3. 26 제147호]
- [개정 2004. 7. 8 제151호]
- [개정 2005. 2. 21 제161호]
- [개정 2006. 2. 8 제173호]
- [개정 2007. 2. 22 제187호]
- [개정 2008. 3. 3 제198호]
- [개정 2008. 10. 27 제208호]
- [개정 2009. 7. 16 제212호]
- [개정 2010. 12. 29 제229호]
- [개정 2011. 2. 28 제234호]
- [개정 2011. 4. 1 제235호]
- [개정 2011. 12. 26 제267호]
- [개정 2012. 2. 27 제268호]
- [개정 2013. 1. 7 제292호]
- [개정 2013. 8. 19 제300호]
- [개정 2014. 3. 3 제312호]
- [개정 2014. 5. 30 제317호]
- [개정 2015. 2. 26 제347호]
- [개정 2015. 3. 23 제348호]
- [개정 2016. 2. 26 제361호]
- [개정 2016. 7. 8 제377호]
- [개정 2017. 2. 28 제380호]
- [개정 2017. 8. 16 제386호]
- [개정 2018. 2. 26 제439호]
- [개정 2018. 5. 16 제447호]

- [개정 2018. 8. 21 제452호]
- [개정 2019. 2. 26 제476호]
- [개정 2019. 8. 28 제494호]
- [개정 2020. 3. 27 제511호]
- [개정 2020. 7. 22 제522호]
- [개정 2021. 2. 3 제529호]
- [개정 2021. 10. 20 제548호]
- [개정 2022. 3. 23 제581호]
- [개정 2022. 8. 10 제586호]
- [개정 2023. 9. 26 제595호]
- [개정 2024. 3. 20 제598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대학은 경북도립대학교라 한다.

제2조의1 (교육목표) 본 대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에 입각하여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발전과 산업사회에 필요한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3조 (위치) 본 대학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114에 둔다.

제3조의1 (경북도립대학교 영주실습장) 축산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실습장을 경상북도 영주시 안정면 대룡산로 220에 두며, 그 명칭은 경북도립대학교 영주실습장이라 한다.(개정 2017.8.16.)

제4조 (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대학에 두는 학과·계열 및 입학정원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에 의하여 별도 입학되는 학생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7.2.28.,2019.2.26.,2019.8.28.,2021.2.3.,2020.10.20.,2022.8.10.,2023.9.26)

설 치 학 과 명	입 학 정 원			비 고
	계	주 간	야 간	
측산과	25명	25명		3년제
유아교육과	28명	28명		3년제
토목공학과	25명	25명		3년제
생활체육과	23명	23명		
자치행정과	45명	25명	20명	주간 3년제
사회복지과	30명	30명		
보건미용과	25명	25명		3년제
소방방재과	30명	30명		3년제
자동차과	30명	30명		
응급구조과	25명	25명		3년제
AI기기 응용과	AI전기제어전공	20명	20명	
	AI농업기기전공	20명	20명	
	AI군사전공	20명	20명	
11개학과	346명	326명	20명	

제 2 장 수업연한과 재학연한

제5조 (수업연한) 본 대학의 수업연한은 2년 또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학사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수업 연한은 전문학사 학위과정 등을 포함하여 4년으로 한다.

제6조 (재학연한)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않는다.(개정 2021.2.3.)

제 3 장 학년, 학기, 수업일수 및 휴업일

제7조 (학년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조 (학기) ①학기는 다음과 같이 2학기로 나눈다.

1. 제 1 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까지

2. 제 2 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②매 학기 수업은 학사운영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기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개강일을 학기 개시일로 본다.(개정 2021.2.3.)

③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학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수업일수) ①수업일수는 매 학년 30주(매 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천재지변 기타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9조의1 (집중이수제)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 1학점당 15시간 기준으로 집중수업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0.7.22.)

제10조 (휴업일) ①정기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개교기념일
2. 일 요 일
3. 법정공휴일
4. 근로자의날(개정 2020.3.27.)

②휴업일은 필요한 경우 총장이 변경할 수 있다.

③총장은 비상재해 등 휴업이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8.8.21.)

④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는 실험·실습 등을 과할 수 있다.

제 4 장 입 학(편입학, 재입학 포함)

제11조 (구분) 입학이라 함은 본 대학의 각 학과에 신입학, 재입학, 편입학 하는 것을 총칭하며 학생으로서 수강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한다.

제12조 (입학시기)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학년개시일로부터 4주이내로 한다. 다만 재입학과 편입학 허가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 이내로 한다.

제13조 (입학자격) 제 1 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

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14조 (입학지원) 입학지원 절차는 모집 시에 따로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8.8.21.)

1.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증명서
2. 최종 학교의 성적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제15조 (입학전형) 신입학전형은 매 학년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전문대학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범위내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6조 (모집요강) 총장은 매 학년도마다 입학생의 모집인원, 선발기준, 전형 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17조 (전형절차) ①입학지원서류는 접수자가 원서의 기재사항과 구비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수험표를 교부한다.

②입학생 사정은 성적순으로 후보자를 선발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개정 2018.8.21.)

③합격자는 게시공고하고 합격 통지서 및 납입금 고지서를 교부한다.

④합격자 발표시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 보충을 위하여 학과별로 후보자 약간 명을 산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7조의1(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대학별 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입시공정관리위원회) ①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입시공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의1(입학전형관리위원회) ①입학전형체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 주요사항을 계획·심의하기 위하여 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입학전형관리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에 따른 임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 (입학허가) 입학허가는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20조 (2중학적금지) 본 대학 학생으로서 2중 학적을 가질 수 없다.

제21조 (편입학) ①전문대학 및 대학 1학년의 전과정을 이수한 자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는 제2학년 1학기 개시일로부터 4주(28)일 이내에 편입학 할 수 있다.

②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한하여 허가한다.

③편입학 전형은 전적교의 성적과 다음 각 호 중에서 총장이 정하는 선발방법을 병합한 전형에 의해 선발한다.

1. 면접고사

2. 실기고사

3. 교양 및 전공과목의 필기고사

제22조 (전과) ①교내전과(이하 “전과” 라 한다)는 제1학년 2학기 또는 제2학년 1학기에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전과는 전입학과의 입학정원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입 및 전출학과 학과장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단, 교원의 양성과 관련되는 학과로 전과는 입학정원 내에 한하여 허가한다.(개정 2018.8.21.,2021.2.3.)

③전과한 자는 소정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이미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④(삭제 2018.2.26.)

제23조 (전과의 신청) 전과를 원하는 자는 제1학년 2학기초 또는 제2학년 1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소정의 원서를 작성하여 해당 양학과장의 추천과 학과장의 확인을 받아 교학처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 (전과의 승인) ①교학처에서는 서류를 심사하여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본인과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②전과한 자의 재학년한은 종전의 재학년한을 통산한다.(개정 2018.8.21.)

제25조 (재입학) ①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 내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나, 병역의무로 인한 군복무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호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학은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동일학과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고 학과장의 신청에 의하여 기 취득한 학점 및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8.21.)

③재입학 전형은 편입학에 우선하여 허가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심사에 의거 선발한다.(개정 2018.8.21.)

1. 재입학원서
2. 이수학기 성적증명서
3. 지도교수의견서(학과장연명)
4. 면접

제 5 장 등록 및 수강신청

제26조 (등록) ①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서식에 의거 지정된 기일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정당한 이유없이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을 때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③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하지 못한 재학생 중에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등록을 일정기간 연기할 수 있다.

④4개학기 이상을 등록하고서도 학점미달 또는 졸업시험 불합격 등으로 졸업을 하지 못하는 수업년간 초과자는 미달학점의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의 등록기간내에 해당 학점분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만일 미달학점 교과목이 개설되는 학기가 한 학기를 경과하게 될 때는 그 한 학기를 휴학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금은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

제27조 (수강신청) 납입금을 납부한 학생은 소정기간 내에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동일전공 교과목으로 인정한 교과목에 한하여 타 학과의 교과목을 수강 할 수 있다.(개정 2018.8.21.)

제28조 (수강지도 및 처리) ①지도교수는 학생의 수강신청을 지도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서를 확인한 후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한다.

②학과장은 학생의 수강신청을 검토하여 승인한 후 이를 교학처에 송부한다.

제29조 (신청학점) ①학생은 매 학기 학칙 제48조 제3항에 따른 이수 허용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 할 수 없다.(개정 2018.8.21.)

②정당한 사유없이 15학점 미만을 수강신청할 수 없다. 다만, 수업년간 경과자로서 이수학점 부족으로 졸업하지 못한 학생은 잔여학점만을 수강신청할 수 있다.

제30조 (재수강 신청) ①학점 미취득 과목의 재수강은 필수과목을 우선하여 수강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교과목의 성적이 B° 미만인 경우에도 재수강할 수 있으며, 재수강을 신청한 교과목의 기 이수성적은 무효로 한다.(개정 2021.2.3.)

②재수강하여야 할 교과목이 폐강되었을 경우에는 유사 교과목을 지정

받아 대체하여 수강할 수 있다.

③재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성적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이미 이수한 학점은 무효로 하며 그 학기 성적 평균평점을 다시 산출한다.
2. 재수강으로 학점을 취득시에 당초 해당학기의 학사경고는 계속 유효하다.
3. 재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학기의 성적에 포함시킨다.

제31조 (수강제한) 강의시간표상 중복되는 교과목과 이미 이수한 교과목은 수강신청할 수 없으며, 과오 또는 고의로 동일 내용의 교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한 때에는 후에 취득한 학점은 취소한다.

제32조 (학점삭제) 수강신청없이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학칙에 의한 허용학점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택과목을 우선하여 이를 삭제하고 해당학생에게 통보한다.

제33조 (수강신청변경)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개설 과목의 폐강, 강의시간 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신청을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휴학, 복학, 퇴학 및 제적

제34조 (휴학) ①질병, 병역의무, 전공관련 창업, 육아(임신·출산 포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주(28일) 이상 수업할 수 없을 때는 보증인 연서로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개정 2017.8.16.)

②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진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휴학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는 총장의 허가를 얻어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창업으로 인한 휴학과 육아(임신·출산 포함)로 인한 휴학은 일반휴학과 별도로 각각 2년(4학기)까지 연속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8.16.)

④휴학한 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며 휴학기간 만료와 동시에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휴학기간 중이라도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⑤휴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 (휴학시기) ①일반휴학은 매 학기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한하여

허가 한다. 다만, 등록기간 이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 4분의 3선 이전까지 허가할 수 있다.

②군입대 예정자는 입영일 이전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휴학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허가일은 입영일로 한다.(개정 2018.8.21.)

③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사유 발생 시 허가한다.

④일반휴학 중에 군에 입영하는 자는 반드시 입영통지서 사본을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 처리한다.(개정 2018.8.21.)

제35조의1 (집중수업) (삭제 2020.7.22.)

제36조 (휴학절차) ①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의 휴학원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도교수와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군입대 휴학으로 인한 휴학은 입영통지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산 신청·처리한다.(개정 2018.8.21.)

1. 일반휴학자는 보호자 연서의 사유서

2. (삭제 2018.8.21.)

3. 질병으로 인한 휴학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

②군입대 휴학자는 입영후 3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 1부를 교학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37조 (군입대 휴학의 취소) 군입대로 인한 휴학자가 귀향조치 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휴학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8.21.)

제38조 (직권휴학) 총장은 법정 전염병 및 기타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에 대하여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39조 (복학시기) ①휴학기간이 만료된 자 및 휴학사유가 소멸된 자는 복학 해당학기 등록기간중에 소정의 원서를 제출하여 복학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한하여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삭제

③군입대 휴학자는 제대 후 1년 이내에 학업이수 해당학기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복학할 수 있다.

1. 전역증 사본

2.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록된 것)

제40조 (복학자 납입금) ①복학자는 복학하는 해당학과, 학년의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2009.7.16)

제41조 (퇴학) 퇴학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사유를 명시한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 (제적)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장이 이를 제적할 수 있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수업일수 4분의 1을 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개정 2018.8.21.)

2. (삭제 2021.2.3.)

3. (삭제 2018.8.21.)

4. 학칙 제75조의 유급을 통산 2회 받은자 다만, 재입학한 자는 재입학 후의 유급회수에 따른다.

5. 타교에 입학한 자

6.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7. 정당한 사유없이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제 7 장 교과 및 수업

제43조 (교육과정) ①본 대학 교육과정은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구분한다.

②각 학과별 교육과정(현장실습 포함)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학생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사회봉사는 전 학과에서 교양교과의 필수로 한다.

⑤실기교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직교과를 운영하며, 교직교과의 이수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⑥성인학습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10.20.)

⑦산업체와 협약에 따라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10.20.)

제44조 (교육과정 편성) ①교육과정은 각 학과에서 편성안을 작성하고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②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이 개편사유와 신·구대비표를 첨부한 개편안을 교학처에 제출한다.

제45조 (교육과정의 적용) 교육과정은 학생의 입학년도별로 적용한다. 다만, 복학·유급·재입학·편입학 학생은 복학당시의 교육과정을 준용하되, 이때 복학·유급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은 입학년도 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제46조 (교육과정의 연계운영) ①총장은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대학 및 산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총장은 국내·외 기업에 대한 취업기회확대 및 능력과 국제감각을 키우기 위해 국내·외 인턴십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교육과정의 연계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의1(공개강좌 및 평생교육원) ①본 대학 학생을 포함한 외부인을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20.7.22.)

②강좌 운영을 위하여 대학 부설 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원을 설치 할 수 있다.(개정 2017.8.16.,2020.7.22.)

③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8.16.)

제46조의2(전공심화과정) ①전문대학 졸업자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비학위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8.21.)

②전문대학 졸업자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 학과 및 입학정원은 별표3과 같다.

④전공심화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공심화과정 운영 위원회를 둔다.

⑤전공심화과정의 설치과정, 모집인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의3(시간제등록) ①본 대학에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할 수 있다.

②시간제 등록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매학기 개설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③모집인원은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④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4(학점은행제) ①본 대학에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80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중 본 대학에서 50학점이상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학점은행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 (특별과정운영) ①본 대학에는 1년 이내의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특별과정은 본 대학에 설치된 학과와 유사한 분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특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48조 (교과이수단위) ①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내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1학점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졸업에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은 2년제는 74학점, 3년제는 108학점으로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교양교과와 전문교과의 필수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하고는 졸업할 수 없다.(개정 2019.2.26., 2022.3.23)

③학생은 매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24학점을 초과 이수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얻어 15학점 이하를 이수할 수 있다.

④필요에 따라 하계 및 동계 휴가중 계절수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절 수업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43조 제③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실습 학점은 2학점 이상으로 하되 현장실습의 방법·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제43조 제④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봉사 학점은 1학점 이상으로 하고, 사회봉사의 방법·기간 및 학점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 (학점인정) ①재학생의 재학기간 중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점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2.3.23.)

②본 대학과 국내·외의 타 대학간에 학점교류에 관한 협정체결에 기준하여 취득한 학점은 본 대학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2.3.23.)

③현장실습학기제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최대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3.23.)

④학점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3.23.)

제50조 (개설교과목) ①매 학기 개설교과목은 학과, 학년별 교육과정표에 의하여 정하되 필요한 경우 교양선택 및 전공선택의 교과목 개설은 조정할 수 있다.

②전공선택 과목은 수강신청 학생수가 10명 미만, 교양선택 과목은 수강신청 학생수가 20명 미만인 교과목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8.8.21.,2019.8.28)

제51조 (강의시간표 편성) ①강의시간표는 강의개시 전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고한다.(개정 2018.8.21.)

②강의시간표를 편성함에 있어 연속강의는 2교시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실험실습 및 실기교과목과 외래강사의 담당교과목, 총장의 승인을 받은 과목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전임교원의 강의는 주당 4일 이상 분산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4일 이상 편성이 불가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8.8.21.)

제52조 (강의계획서) 교과 담당교수는 매 학년도 학사일정에 따라 학기 개시 전에 강의계획서를 교학처에 제출하고, 강의계획서를 복사하여 학기 초에 수강생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8.21.)

제53조 (수업) ①매 학기의 개설 교과목은 학기 수업 개시 전에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하고, 09:00부터 23:50까지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개정 2018.8.21.)

②학교의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주말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대면·비대면 병행 수업(블랜드드 러닝, 플립드 러닝 등) 및 현장 실습수업 등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1.2.3., 개정 2021.10.20)

③감염병 등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 시 수업 운영방법(비대면 수업 등) 및 학점인정에 필요한 이수시간, 출석인정, 평가 등의 사항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2.3.)

제53조의1 (타교생의 수학) 국내·내외의 대학에서 재학중인 학생이 본교에서 수학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수학기간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대학의 교류협정 등에 의한다.

제53조의2 (교원의 교수시간) 교원의 교수 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개정 2018.2.26.)

제54조 (출석확인) 교과 담당교수는 강의시간 마다 학생의 출석을 확인

하고 신고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결석한 자는 이를 교학처에 통보한다.
제54조의1 (출석의무) ①수강신청한 학생은 해당교과목에 출석할 의무를 가진다.

②졸업예정자(최종학기 등록자) 중 조기취업의 경우 출석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2.26.)

제55조 (공결) ①병역, 교육훈련, 질병, 경조사 등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학생은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교부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①항에 의거 공결로 인정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성적평가에 있어 출석점수를 감하지 아니한다.

③공결인정기간은 총수업시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

제56조 (휴,결강 및 보강) ①학사일정에 계획이 없는 휴강 또는 담당교수의 사정에 의한 결강시간은 당해 학기에 보강하여야 한다.

②보강은 사전에 보강계획서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학처장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7조 (강의현황표) ①교과 담당교수는 강의종료 후 강의현황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학과장은 강의시간표에 의한 강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없이 휴강 또는 결강하는 일이 없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58조 (교외출강) ①전임교원이 타 대학에 출강하고자 할 때에는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학처에 신고하여야 하며 총장의 동의를 받아 겸직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8.8.21.)

②교외 출강시간은 주당 6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내 담당강의 시간과 합하여 2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8 장 성적평가 및 졸업

제59조 (평가지험) ①성적 평가는 주관식시험과 객관식시험, 평소의 학습 및 과제물 등을 병용하되, 그 실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3.23.)

②각 교과목 총수업 시간수의 4분의 1이상을 결석한 자는 당해 교과목의 시험에 응할 수 없다.

③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때에는 총장의 허가

를 얻어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학과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졸업에 필요한 시험을 과할 수 있다.

⑤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각 교과담당 교수는 평소의 학습평가를 위하여 수시로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8.8.21.,2022.3.23.)

⑥중간고사 및 기말고사 등 성적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8.8.21.)

제60조 (추가시험) ①부득이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담당 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교과담당교수는 제①항의 불응시 신고학생에 대하여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추가시험의 성적은 정상시험 성적의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61조 (수험생 확인) ①감독교수는 매 시험시간마다 수험생을 학생증과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②감독교수는 시험종료 후 수험생수와 답안지수를 확인하고 표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제62조 (부정행위자 처리) ①감독교수가 부정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본인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사인받은 후 답안지에 “부정행위”라고 명기하고 그 내용을 교학처로 통보하여 학칙에 의해 처리토록 한다.

②교과 담당교수는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해당 교과목 성적을 “F”로 처리한다

제63조 (성적) ①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상황, 평소 학습성적, 과제 및 시험성적 등을 종합평가한다. 다만, 실험·실습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특정교과의 성적평가는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의무 이수교과목의 실험, 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등 급	배 점	평 점	등급	배 점	평 점
A+	100 - 95	4.5	C°	74 - 70	2.0
A°	94 - 90	4.0	D+	69 - 65	1.5
B+	89 - 85	3.5	D°	64 - 60	1.0
B°	84 - 80	3.0	F	59 이하	0
C+	79 - 75	2.5	P		불 계

③추가시험 성적은 B+ 급까지 인정할 수 있다

④성적평가 업무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성적 평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성적 배점분포에 대하여는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 (성적산출)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중간고사, 기말고사, 평소의 학습태도, 과제, 출석 등을 종합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2.3.23.)

② 각 교과목의 실제 수업시간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에게는 시험 등의 점수에 불구하고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③ 평균평점을 100%의 실점수(100점 만점)로 환산할 경우에는 취득한 평균평점 4.00이하의 경우 $\text{평균평점} \times 10 + 54$ 의 값을, 평균평점 4.00초과는 $(\text{평균평점} - 4) \times 10 + 95$ 의 값을 실점수로 표기한다.

제65조 (성적표 제출) 교과 담당교수는 기말고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성적 평가표를 교학처에 제출하고, 시험답안지 등은 2년간 보존한다.(개정 2018.8.21.)

제66조 (성적열람) 학생의 성적열람은 학과별로 기간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67조 (성적정정) ① 교과 담당교수가 평가하여 교학처에 제출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 다만, 채점 및 기록의 착오 또는 오기로 인한 경우에는 교과담당교수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성적이의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성적정정을 허가하고 해당학과장 및 전산실에 통보한다.(개정 2018.8.21.)

제68조 (성적통보) 교학처에서는 학생의 매 학기 성적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 (성적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성적을 취소한다.

1. 시험 중 부정행위 등 부당한 방법으로 취득한 성적
2. 미등록자 또는 출석미달자의 성적
3. 수강신청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

제70조 (결시자 특례) ① 병역, 교육훈련, 질병 등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중간고사, 기말고사 및 추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학생은 사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인정원을 교학처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받아 해당 교과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8.21.)

② 제1항의 담당교수는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와 평소성적 및 출석상황 등을 참작하여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8.8.21.)

③ 총수업일수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고 중간고사를 응시한 후 군입대 및 질병 휴학한 자는 성적포기원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시시험이나 중

간고사성적을 기말고사 성적으로 인정하여 당해학기 성적을 부여할 수 있다.

④제②항 및 제③항의 인정성적은 B+(89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1조 (성적의 취소) 이미 인정된 성적이 과오 또는 부정행위에 의한 것일 때에는 이를 취소한다.

제71조의1 (성적포기) 삭제

제72조 (졸업 및 수료) ①소정의 전과정을 이수하고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졸업학점이 충족된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별표에 해당 하는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②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도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에게는 별지 2호 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은 다음과 같다.

1. 1학년 수료 : 37학점 이상(개정 2019.2.26.,2022.3.23)

2. 2학년 수료 : 74학점 이상(개정 2019.2.26.,2022.3.23)

3. 3학년 수료 : 108학점 이상(개정 2019.2.26.,2022.3.23)

③학점미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후 후기졸업을 할 수 있다.

제 9 장 학사경고 및 유급

제73조 (학사경고) 성적평가 결과 성적이 불량하여 탈락이 예상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매 학기마다 성적 평균평점이 1.5 미만인 자와 취득학점이 12학점 미만인 학생에 대하여 학사경고를 한다.

②학사경고를 보호자 및 본인에게 통보한다.(개정 2018.8.21.)

③학사경고자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8.21.)

제74조 (진급 예외조건) 삭제

제75조 (유급) ①소정의 학점 미달자와 진급 또는 졸업사정에서 탈락된 자는 재학기간 중 1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유급할 수 있다. 그 운영 방법은 다음의 각 호에 정한다.

1. 동일학년의 1학기과 2학기에 연속하여 학사경고를 받은 자는 유급시키

고 보호자 또는 본인에게 통보한다.(개정 2018.8.21.)

2. 유급된 자의 당해학년 취득성적을 무효로 처리하고 재이수하여야 한다.

제 10 장 학생 활동

제76조 (학생회조직) ①건전한 학생활동을 통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지도력과 창의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학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77조 (학생회비) 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8조 (학생단체의 조직) 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9조 (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 연구 등을 방해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18.8.21.)

제80조 (학생지도) ①총장은 매 학년초 학생지도 계획을 세워 학생지도를 분담시키며 지도교수는 총장의 명을 받아 학생을 지도하되, 특히 학칙위반자에 대하여는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개별상담에 응하고 그 문제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학생회를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두며 학생지도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학생집단 활동시 행사를 주관하는 학생과 담당 지도교수를 책임자로 지정한다.

제81조 (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교내, 외 10인 이상의 집회
2. 교내, 외 광고 및 인쇄물의 부착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제82조 (간행물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3조 (처벌) 본 장의 제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를 포함한다)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없다.

제 11 장 규율과 상벌

제84조 (규율)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성심성의로 학업에 종사하여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 교양을 높임으로써 장차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닦아야 한다

제85조 (결석) (삭제 2018.8.21.)

제86조 (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7조 (징계) ①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 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한 자(개정 2018.8.21.)
 2. (삭제 2018.8.21.)
 3. (삭제 2018.8.21.)
 4. 집단활동 시 발생한 인권침해 가해자 및 연대책임자. 단, 연대책임 지정 교수에 대한 징계는 교원인사위원회 및 교원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5. 기타 학생의 본분을 이탈한 행위를 한 자
- ②징계는 그 정상에 따라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및 퇴학으로 구분한다.

제 12 장 납입금

제88조 (납입금) ①학생은 매 학기 등록시기에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학기가 개시되기 전에 휴학하고자 하는 자는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개정 2018.8.21.)

②학생의 매 학기 등록에 따른 납입금액과 납부기일은 총장이 정하여 학기 개시일 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학생의 매 학기 등록에 따른 납입금액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9.2.26.)

④수업년한 경과자로서 이수학점이 부족하여 졸업하지 못한 학생의 납입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8.2.26.)

1. 10학점이상 수강신청하는 경우 - 수업료 전액(개정 2018.2.26.)
2. 7학점이상 9학점 이하 수강 신청하는 경우 - 수업료의 1/2 해당액(개정 2018.2.26.)
3. 4학점이상 6학점 이하 수강 신청하는 경우 - 수업료의 1/3 해당액(개정 2018.2.26.)
4. 1학점이상 3학점 이하 수강 신청하는 경우 - 수업료의 1/6 해당액(개정 2018.2.26.)
- ⑤유급된 자 및 수업년한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학점에 상관없이 해당학기의 납입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2.26.)
- ⑥(삭제 2018.2.26.)
- ⑦납부한 납입금이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 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8.2.26., 2018.8.21.)

제88조의1 (등록금심의위원회) ①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등을 책정하기 위하여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1.2.3.)
 ②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1.2.3.)

제89조 (납입금의 면제)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및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하여 납입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13 장 장 학 금

제90조 (장학금) ①총장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거나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할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장학생이 휴학, 제적 및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며 자퇴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4 장 교수회 및 위원회

제91조 (교수회 구성) ①본 대학에 교수회를 두며,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8.21.)

②교수회 의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개정 2018.8.21.)

제92조 (교수회 소집 및 심의) ①교수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의장 부재시에는 의장이 지명한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8.21.)

②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학과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3.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3조 (교무위원회) 본 대학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94조 (교무위원회 구성 및 소집) ①교무위원회는 총장, 행정사무국장, 기획홍보처장, 교학처장, 부속기관장 및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간명의 교수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교무위원회는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제94조의1(각종 위원회) 총장은 자문과 부서별 중요사항의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4조의2(자체평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4조의3(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 운영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4조의4(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심의) ①도서관운영위원회는 총장, 행정사무국장, 기획홍보처장, 교학처장, 평생교육원장, 취창업지원센터장, 산학협력단장, 도서관장 및 학과장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8.21.)

②도서관운영위원회는 총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총장 부재 시에는 그 직무 대리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③도서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법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2. 대학도서관의 예산에 관한 사항
3. 대학도서관의 조직에 관한 사항
4.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대학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학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5조(대학평의회) ① 본교의 자율적 발전과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를 둔다.(신설 2018.5.16.)

② 대학평의회 구성은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의 관련 내용을 준용한다.(신설 2018.5.16.)

③ 대학평의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각 1명을 두며,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18.5.16., 개정 2021.2.3)

④ 대학평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신설 2018.5.16.)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신설 2018.5.16.)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8.5.16.)
3. 대학현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8.5.16.)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8.5.16.)
5. 그밖에 총장이 요청하는 사항 및 대학평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사항(신설 2018.5.16.)

⑤ 제4항에 따른 심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8.5.16.)

⑥ 대학평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8.5.16.)

제 15 장 직 제

제96조 (교직원의 종류와 임무) ① 본 대학에는 총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원 포함)과 겸임교원, 초빙교원(비전임 산학협력중점

교원 포함), 강사 등 비전임교원, 행정직원 및 조교를 둔다.(개정 2018.2.26.,2019.8.28.,2024.3.20)

- ②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③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④비전임교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신설 2019.8.28.)

1. 겸임교원 : 순수 학술 이론 과목이 아닌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자로 임용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8.28.)
2. 초빙교원 :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자로 임용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8.28.)
3. 강 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로 임용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8.28.)

⑤행정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개정 2019.8.28.)

제97조 (직제) ①본 대학에는 행정사무국, 기획홍보처, 교학처를 둔다.

②국, 각 처에 각각 국장,처장을 보하고 국장·처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장려하고 국·처내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국, 각 처의 사무분장은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및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 16 장 부속기관 및 산학협력단

제98조 (부속시설 등) ①본 대학에는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부속시설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관장한다.

③ 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은 「경북도립대학교 부속시설 등의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99조() 삭제

제99조의 1() 삭제

제99조의 2(산학협력단 설립) ①본 대학에 산학연 협력사업을 전담·지원할 경북도립대학교산학협력단을 법인으로 둔다.

②삭제

③경북도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는 단장을 두며,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8.8.21.)

④경북도립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 등 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8.8.21.)

제 17 장 남녀차별 및 성희롱예방

제100조 (남녀차별금지) ①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교육 목표제, 교육내용 구성, 생활지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성별에 따라 교과선택기회, 진로범위 등을 제한하거나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

제101조 (성희롱예방및처리) 성희롱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제18장 학칙 제·개정 절차

제102조(학칙 등 제·개정)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제·개정을 할 경우에는 제·개정안의 취지·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2조의1(제 규정 개정 절차) 학칙시행세칙 및 제 규정의 제·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한다.

제103조(공고기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

제104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본 대학의 구성원은 공고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5조(심의) 공고된 학칙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8.21.)

제106조(공포)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마친 제·개정안은 교수회의 동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공포한다.(개정 2018.8.21.)

제 19 장 학교기업

제107조 (학교기업의 설치) ①본대학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경북도립대학교학교기업(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을 두며, 학교기업별 명칭, 소재지, 사업종목, 관련학과는[별표 2]와 같다.

②학교기업은 교지(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학길 114, 경북 영주시 안정면 대룡산로 220)에 위치 한다.(개정 2018.5.16.)

제108조 (학교기업의 현장실습) ①학교기업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학점 인정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의 범위 내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기타 학교기업의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09조 (학교기업에서의 보상금 지급) ①학교기업의 운영성과를 결산한 결과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순이익의 60% 범위내에서 수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결산순이익금의 20%를 넘을 수 없다.(개정 2018.8.21.)

③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의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제1항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권리로 발생한 매출액의 5%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기타 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20 장 보칙

제110조 (산업체 위탁교육) ①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에서 근무중인 자의 교육을 산업체로부터 일괄하여 위탁받은 경우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교육 계약에는 위탁생의 선발기준, 위탁교육 경비의 부담 및 납부방법,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 산업체의 시설 및 교수 자격이 있는 자의 활용, 학교에 대한 산업체의 지원 등 위탁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산업체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1조 (시행)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2조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장애로 인하여 교육 및 대학생활에 차별이나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와 지원을 한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1997. 3. 1 예천전문대학내규 제 1호)

①(시행일)이 학칙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7 예천전문대학내규 제 32 호)

①(시행일)이 학칙은 1997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8. 20 예천전문대학내규 제 44 호)

①(시행일)이 학칙은 199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 15, 경도대학내규 제 58 호)

①(시행일)이 학칙은 1998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예천전문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경도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1999. 8. 2, 경도대학내규 제 86 호)

①(시행일)이 학칙은 1999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학생에 대한 경과조치)이 학칙 시행당시의 재적생은 종전 학칙과 개정학칙이 상충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학칙을 적용한다.

부 칙(1999. 10. 30, 경도대학내규 제 88 호)

①(시행일)이 학칙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8. 18, 경도대학내규 제 105 호)

①(시행일)이 학칙은 2000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 16, 경도대학내규 제 113 호)

①(시행일)이 학칙은 2001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2. 27 경도대학내규 제118호)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5. 16 경도대학내규 제131호)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2. 28. 경도대학내규 제132호)

제1조(시행일)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종전의 학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2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신설, 통합 또는 개편된 학과의 소속으로 본다.

부 칙(2003. 11. 25. 경도대학내규 제136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조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과의 개편등에 따른 경과 조치) 종전의 건설환경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건설환경계열 소속으로 본다.

부 칙(2004. 2. 5. 경도대학내규 제140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2. 27. 경도대학내규 제144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3. 26. 경도대학내규 제147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7. 8. 경도대학내규 제151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24. 경도대학내규 제161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단, 학칙 제4조 학과명칭 변경사항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②종전의 기계자동차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4학년도 말 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자동차소방계열 자동차전공 소속으로 본다.

③종전의 산업디자인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4학년도 말 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디지털디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④종전의 피부미용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뷰티디자인과 소속으로 본다.

⑤종전의 건설환경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토목과 소속으로 본다.

⑥종전의 인터넷정보통신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0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정보통신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2006. 2. 8. 경도대학내규 제173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학칙 제4조의 학과명칭 변경사항은 2006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②종전의 컴퓨터정보과학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행정사무전산과 소속으로 본다.

③종전의 사회체육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0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생활체육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2007. 2. 22 경도대학내규 제187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학칙 제4조의 학과명칭 변경사항은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②종전의 정보통신과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06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군산관학특약계열 소속으로 본다.

제3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학과가 폐지되는 디지털디자인과, 행정사무전산과(주간, 야간)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07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동일계열의 유사학과로의 전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되 기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제4조(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②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재학할 수 있다.

③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는 3년제 과정으로 재입학 한다.

부 칙(2008. 3. 3 경도대학내규 제198호)

제 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2008. 10. 27 경북도립대학내규 제208호)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단, 제4조 학과명칭 변경사항은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경도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경북도립대학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의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 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북도립대학 제 규정의 개정) 이 학칙 시행시 제 규정의 명칭 및 본문의 “경도대학”은 “경북도립대학”으로 하며, “교학지원과”는 “교학과”로 한다.

제4조 (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②종전의 군산관학계열에 소속된 재학생중 정당한 사유로 2008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IT특약계열 소속으로 본다.

부 칙(2009. 7. 16 경북도립대학내규 제212호)

제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북도립대학 제 규정의 개정) 이 학칙 시행시 제 규정의 명칭 및 본문의 “학장”은 “총장”으로 하며, “경북도립대학장”은 “경북도립대학총장”으로 한다.

부 칙(2010. 12. 29 경북도립대학내규 제229호)

제 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2. 29 경북도립대학내규 제234호)

제 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4조 학과 명칭 변경사항은 201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4. 1 경북도립대학내규 제235호)

제 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12. 26 경북도립대학내규 제267호)

제 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2. 27 경북도립대학내규 제268호)

제 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4조 학과 명칭 변경사항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 1. 7. 경북도립대학교 내규 제 292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명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당시 종전의 “경북도립대학” 재적생은 이 학칙에 의하여 “경북도립대학교”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학칙의 시행당시 종전 학칙의 교명으로 수여된 졸업장 또는 전문학사 학위는 각각 이 학칙의 교명으로 발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경북도립대학 제 규정의 개정) 이 학칙 시행시 제 규정의 명칭 및 본문의 “경북도립대학”은 “경북도립대학교”로 “행정지원과”는 “행정사무국”으로 “행정지원과장”은 “행정사무국장”으로 한다.

부 칙(2013. 8. 19. 경북도립대학교내규 제 300 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시행 시 종전의 학과는 현 학과 기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②종전의 스타일코디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방송연예코디과 소속으로 본다.

③종전의 행정복지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0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지방행정과 및 사회복지과 소속으로 본다.

④종전의 자동차소방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1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안전학부(자동차과, 소방방재과) 소속으로 본다.

부 칙(2014. 3. 3. 경북도립대학교내규 제 312 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5. 30. 경북도립대학교내규 제 317 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 제71조의1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 26. 경북도립대학교내규 제 347 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4조의 학과

명칭 변경사항은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2조(학과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학과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변경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으로 본다.

②종전의 IT특약계열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IT특약과 소속으로 본다.

③종전의 토목과에 소속된 재학생 중 정당한 사유로 2014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는 건설공간시스템과 소속으로 본다.

제3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학과가 폐지되는 방송연예코디과, 피부미용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15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동일계열의 유사학과로의 전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되 기 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부 칙(2015. 03. 23 경북도립대학내규 제 348 호)

제 1조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26. 경북도립대학교내규 제361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4조 학부 개편에 따른 학과로의 변경사항은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2조(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②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재학 할 수 있다.

③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는 3년제 과정으로 재입학 한다.

부 칙(2017. 2. 28. 경북도립대학교내규 제380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4조 학부 개편에 따른 학과로의 변경사항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2조(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②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재학 할 수 있다.

③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는 3년제 과정으로 재입학 한다.

부 칙(2017. 8. 16. 경북도립대학교내규 제386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북도립대학교 제 규정의 개정) 이 학칙 시행 시 제 규정의 명칭 및 본문의 “교학과”는 “교학처”로 “교학과장”을 “교학처장”으로 하며, “기획홍보과”는 “기획홍보처”로 “기획홍보과장”은 “기획홍보처장”으로 한다.

부 칙(2018. 2. 26. 경북도립대학교내규 제439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북도립대학교 제 규정의 개정) ①이 학칙 시행 시 강사료지급규정 내 전임교원의 책임시수는 “12시간”에서 “9시간”으로 한다.

부 칙(2019. 2. 26. 경북도립대학교내규 제476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4조 학과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2조(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②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재학 할 수 있다.

③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는 3년제 과정으로 재입학 한다.

제3조(졸업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졸업이수학점에 관한 내용은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2019. 8. 28. 경북도립대학교내규 제491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4조 학과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2조(수업연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2년제 과정이 3년제 과정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자의 신분, 학위취득 등 학사운영에 대하여는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②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휴학하였다가 복학할 경우 복학하는 학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2년제 또는 3년제 학과를 선택하여 재학 할 수 있다.

③종전의 2년제 과정으로 입학한 학생이 제적되었다가 재입학하는 경우는 3년제 과정으로 재입학 한다.

부 칙(2021. 2. 3. 경북도립대학교내규 제529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학칙 제4조 학과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 칙(2022. 3. 23. 경북도립대학교내규 제581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졸업이수학점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에 졸업이수학점 및 수료에 관한 내용은 종전의 학칙에 의한다.

부 칙(2022. 8. 10. 경북도립대학교내규 제586호)

제1조(시행일) 학칙 제4조 학과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제2조(학과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폐지된 학과의 소속 재적생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사학과의 소속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②학과가 폐지되는 전기전자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4학년도 말까지, 군사학과에 소속된 재적생 중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2023학년도 말까지 졸업하지 못한 자가 동일계열의 유사학과로의 전과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과를 허용하되 기취득한 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부 칙(2023. 9. 26. 경북도립대학교내규 제595호)

제1조(시행일) 학칙 제4조 학과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부 칙(2024. 3. 20. 경북도립대학교내규 제598호)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학사 학위의 종별(개정 2017.2.28., 2024.3.20)

학 과 별		학 위 종 별	비고
축산과		농업전문학사	
유아교육과		교육전문학사	
토목공학과		공업전문학사	
보건미용과		보건미용전문학사	
생활체육과		사회체육전문학사	
자치행정과		행정전문학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전문학사	
소방방재과		공업전문학사	
자동차과			
응급구조과		보건전문학사	
IT학부	전기전자과	공업전문학사	
AI기기응용과	AI전기제어전공	공업전문학사	
	AI군사전공		
	AI농업기기전공		

【별표2】 (개정 2018.5.16.)

기업명칭	소재지	사업종목	관련학과	비고
라오닐	경북 예천군 예천읍 도립대 학길 114	가. 학생 현장실습교육 개발·운영 나. 도장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 다. 디자인 및 색상에 대한 연구·개발 라. 자동차 및 각종 상품의 칼라 수정·보수 마. 페인트의 조색·판매 바. 각종 상품의 디자인 및 페인팅에 관한 용역의 제공 사. 커스텀 페인팅 아. 대학의 발전지원	자동차과	
POM&A	상동	가. 학생 현장실습교육 개발·운영 나. 신체측정에 관련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 다. 신체측정에 관련된 기구의 연구·개발 라. 각종 신체측정 등에 관한 용역의 제공 마. 대학의 발전 지원	생활체육과 · IT학부	
GPC 바이오	경북 영주시 안정면 대룡산 로 220 (경북도 립학교 영주실 습장)	가. 학생 현장실습교육 개발·운영 나. 한우 수정란 생산·이식 등 개량관련 연구사업 다. 한우 수정란 생산·이식 등 한우개량 기술에 관한 연구 및 연구용역사업 라. 지역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마. 지역 한우농가 및 산업체 기술지도 및 상담 바. 한우 수정란 생산·이식 등 개량기술 연구성과물과 관련한 출판사업 등 사. 대학의 발전지원	축산과	

[별표 3]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및 학위의 종별(개정 2019.2.26.)

해당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정원	학위 종별	비 고
소방방재학과	10명	공학사	
유아교육학과	10명	교육학사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 대학 과(또는 계열 전공)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경 북 도 립 대 학 교 총 장

학위등록번호 : 경북도립-YYYY-0000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수료증서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본 대학 과(또는 계열 전공)
소정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경 북 도 립 대 학 교 총 장

등록번호 : 경북도립-YYYY-0000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학 위 증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위 사람은 본 대학 과(또는 계열 전공)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경 북 도 립 대 학 교 총 장

학위등록번호 : 경북도립-(학)YYYY-0000